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8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김영환·김한규·윤건영

위성락 • 박홍배 • 이기헌

황정아 • 윤호중 • 이성윤

노종면 • 전현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품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에 해당함에도 공직자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을 앞당기 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엄격하게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하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하도록 하며,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5항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유가증권"을 "유가증권,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행위"를 "행위 또는 그 지급순서나 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종전의제15호) 중 "제14호까지의"를 "제16호까지의"로 한다.

- 15. 행정 집행 시기, 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
- 16. 발표되지 아니한 부동산·자원 개발 계획, 산업·금융 정책 등 유가증권시장이나 환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제 공하는 행위

제8조제4항 중 "배우자는"을 "배우자, 공직자등 및 그 배우자의 2촌이 내 혈족(이하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배우자에게"를 "배우자등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신의

배우자가"를 각각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그 배우자가"를 각각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등이"로, "배우자로"를 "배우자등 으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자신의 배우자가"를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 이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배우자가"를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 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에게"를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에게"로 한다.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등. 다만,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본문 중 "자신의 배우자가"를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 이"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배우자가"를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 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에게"를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에게"로 한다.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등. 다만,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u>유가증권</u> , 부동산,	가 <u>유가증권, 가상자</u>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	산(「가상자산 이용자 보		
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u>을 말한다)</u>		
나. • 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			
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			
는 아니 된다.			

- 1. ~ 7. (생략)
-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
 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행위
- 9. ~ 14. (생 략) <u><신 설></u>

<신 설>

- 15. 제1호부터 <u>제14호까지의</u> 부 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 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 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 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행위 또는 그
지급순서나 시기 등을 앞당기
는 행위
9. ~ 14. (현행과 같음)
15. 행정 집행 시기, 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
16. 발표되지 아니한 부동산·
자원 개발 계획, 산업·금융
정책 등 유가증권시장이나 환
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7제16호까지의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등 및 그 배우자의 2촌이내 혈 족(이하 "공직자등의 배우자등"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이라 한다)은-----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 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 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 -----<u>배우</u>자등에게 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 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및 처리)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직자등이 <u>자신의 배우자가</u> 2. -----<u>공직자등의 배우</u>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u>자등이-----</u>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 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③ (생 략)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

②
<u>o]</u>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u>

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 등 또는 <u>그</u>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 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 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5
⑥ (현행과 같음)
⑦
<u>я</u> н
<u> 우자등이</u>
<u>배우자등으로</u>

⑧ (생략)

-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u>자신의 배우자가</u>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⑧ (현행과 같음)
]22조(벌칙) ①
1. (현행과 같음)
2. <u>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u>
- <u>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u>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
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
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의 배우자등. 다만,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이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 5. (생략)

② ~ ④ (생 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	
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	
우는 제외한다.	-
3	
J.	
<u>공직지</u>	-
등의 배우자등에게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 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를 취소한다.

- 1. (생략)
- 2. <u>자신의 배우자가</u>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 을 포함한다) 또는 그 <u>배우자</u> 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노하기	<u>4</u>
	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	경 <u></u>
	우는 제외한다.	
3.		_
		-
		_
		-
	공직기	지-
	등의 배우자등에게	
	<u>8 = 1 - 11 2 8 - 11 1</u>	_
Œ	· · · · · · · · · · · · · · · · · · ·	
P)・⑦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